

지식재산처, 의로운 시민·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다

- 특허 수수료 면제에 이어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무료 선임까지 -

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무료로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복잡한 심판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고 심판 대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그간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국가유공자 등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대상범위가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된다. 국선대리인 선임은 특허권 등의 무효·취소·정정 심판 등이 모두 해당되며, 심판청구료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이번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경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는 특허 등의 출원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원료,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관점에서 촘촘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담당부서	특허심판원	책임자	과 장	최일승 (042-481-5879)
	심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현주 (042-481-5583)

□ **개요**

- 심판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19.7.~)

* (관련 근거)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상표법 제124조의2,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총리령)

□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 특허심판원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특허심판원 누리집 <<https://www.kipo.go.kr/ipt/>>

- ① (서류 제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중소기업확인서 등 서류제출 생략 가능
- ② (신청 시기) 심판장이 심리종결을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국선대리인 선임 절차 >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국선대리인 예정자(pool)중에서 선임

< 국선대리인 선임 주요 대상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가족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유족/가족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가족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유족/가족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법인, 개인)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대기업과 산업재산권 분쟁 중인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 ▶ (신규 추가) 의사상자, 유족/가족
- ▶ (신규 추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가족